

개정 2023. 3. 24.

定 款

주식회사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축구 및 그 외 각종 스포츠 흥행 및 중개사업
2.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3. TV방송, 잡지, 출판물, 캐릭터 상품의 기획, 제작에 따른 판매
4.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
5. 경기장 마케팅 사업
6. 중계권 판매사업
7. 광고판매, 프로모션 및 이벤트 사업
8. 운동용품 및 일용잡화 판매사업
9. 축구 및 기타 스포츠 선수의 육성/지도, 시설 및 단체 경영과 위탁관리
10.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상남도 창원시 내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 방법은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남신문, 경남도 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에 게재 또는 본 회사의 홈페이지(www.gyeongnamfc.com)에 게재한다.

(본조개정 2011. 7. 15.) (본조개정 2021. 3. 31.)

제 2 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로 한다.

제6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5,8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는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채의 총액이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4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소집권자)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남매일에 게재 또는 본 회사의 홈페이지(www.gyeongnamfc.com)에 게재한다. (본항개정 2011. 7. 15.) (본항개정 2021. 3. 31.)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 사 · 감 사 · 이 사 회 · 대 표 이 사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본항개정 2011. 3. 25.)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2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궐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이사회가 정한다.

제2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조(구단주의 선임) 경상남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구단주로 한다.
(본조개정 2023. 03. 24.)

제36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단운영의 주요사안을 구단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대표이사의 임기)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 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본항신설 2022.03.31.)

제 5 장 회 계

제39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항개정 2010. 3. 26.)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자본변동표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2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장 보 칙

제43조(해산)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분할·분할합병될 때
2.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3. 회사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을 때

제44조(정관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46조(내부규정)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05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영업년도)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06. 3. 29)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06년 3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26)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5)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점 이후에 선임된 이사의 첫임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1. 7. 15)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1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점 이후에 선임된 이사의
첫임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9. 12. 17)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31)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31)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2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4)

제1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 부터 시행한다.